

신기술·특허공법(교통우회가교) 선정공고
질의사항 답변서

접수번호 #1

질 의 서

공 고 명 : 장제로 기능개선 및 확장공사 신기술·특허공법
(교통우회가교 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

질의자	회 사 명		접수번호	1
	성명/직급		접수일시	
	연 락 처		설계사회신일	

[질의내용]

○ **흑백 작성 범위에 대한 질의**

- 제안요청서 19p 감점기준(기관평가) 5) 항목에 “제안서는 흑백으로 작성”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안요청서상 정량적 평가자료와 정성적 평가자료의 표지가 각각 제안서로 명시되어 있는바, **흑백 작성 기준이 정량적 평가자료와 정성적 평가자료 모두에 적용되는 것인지, 또는 특정 평가자료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급·관급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

- 제안요청서 11p의 하도급 조건에는 “제출한 견적금액이 설계에 반영되어 하도급 조건으로 직접시공 참여시” 라고 명시되어 있어, 조건부로 규정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공사 수주업체와의 계약 및 공법 적용 시, 신기술·특허공법 적용분이 원도급사를 통한 사급(하도급) 방식으로 계약되는 것인지, 또는 발주기관의 관급 방식으로 계약되는 것인지 적용 기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우회가교 사용기간에 따른 손율 적용기준 질의**

- 제안요청서 10p 견적조건의 가교 사용기간에 따른 손율 적용기준이 “1년 이상” 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사용기간에 따른 현행 명칭은 “1개년(50%), 2개년(75%), 2개년 초과(85%)” 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제안요청서상 “1년 이상” 은 현행 기준의 “2개년” 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교통우회가교 견적금액 산정 시 “2개년” 기준의 손율을 적용하면 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견적금액 산정 시 적용단가 기준시점에 대한 질의**

- 제안요청서 11p 견적조건에는 “물가구성 시 '26년 상반기 기준단가를 적용”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세부 적용기준에는 “2026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2026년 하반기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 을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적용 기준시점이 상이합니다.

이에 견적금액 산정 시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의 적용 기준을 상·하반기로 명확히 제시하여 주시고, 자재단가의 경우 가격정보·물가자료·물가정보 등 월별로 공표되는 자료를 적용함에 따라 적용 기준월을 명확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우회가교 여유고 및 계획고 적용에 대한 질의**

- 제안요청서상 원당교는 계획홍수위(HWL 8.46m) 및 여유고 1.0m 확보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나, 원당1교는 당하양수장 용수 공급기간(4월~9월) 내 수위 상승(2.0m 이상)을 고려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원당1교의 수위 상승조건을 고려한 별도의 여유고 적용 여부 및 적용기준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당1교 및 원당교의 교통우회가교 계획고는 추후 실시설계 및 관련기관 협의 등을 통해 결정되는 사항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도부 설계하중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

- 제안요청서상 교통우회가교에 보행자 통행을 고려 하는 것으로 확인 됩니다.

이에 가설교량 구조설계 시 KL-510 하중 외 보도부의 보행자 하중을 별도로 적용하여 구조안전성 및 처짐을 검토하여야 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반침하 수치해석자료 제출대한 질의**

- 제안요청서 40p [서식 6]에 “도면, 수량산출서, 산출내역서, **지반침하 수치해석** 등 세부자료 별도첨부”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우회가교 공법제안 시 제출하는 구조검토자료와 별도로 명시된 “**지반침하 수치해석**” 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검토 및 자료를 의미하는지와 공법제안자가 별도로 수행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안전시설물 등 특허 외 견적범위에 대한 질의

- 제안요청서 10p 견적조건에는 시·종점부 흙막이 및 철재 난간의 공사비를 포함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반면, 제안요청서 3p 유의사항에는 “차량 추락방지용 방호벽 및 보행자 낙하물방지망 등 안전시설물 설치가 계획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차량 추락방지용 방호벽 및 보행자 낙하물방지망 등은 신기술·특허공법 자체의 공사범위 외 부대 안전시설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의 규격·수량 및 적용범위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안업체별로 이를 견적에 반영할 경우 업체별 산정조건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기준에 따른 공사비 비교·평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제안업체 간 동일한 기준으로 공사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견적범위를 특허공종인 가설교량 상·하부 1식으로 한정하고, 그 외 부대 안전시설은 공법선정 이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별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량별 평가방식 및 정성평가자료 작성범위에 대한 질의

- 본 제안대상은 원당1교 및 원당교 교통우회가교 2개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제안대상은 원당1교 및 원당교 교통우회가교 2개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성평가자료는 1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일 공종이라 하더라도 대상 시설물별로 공법선정 및 계약이 별도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 현장의 여건과 교량별 구조·시공조건 등을 반영하여 개별적으로 공법심의를 진행하는 사례가 일반적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공법심의가 원당1교와 원당교를 통합하여 1건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또는 가설교량별로 각각 별도의 건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명확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성평가자료(발표자료)를 원당1교와 원당교 각각 별도로 10페이지 이내로 작성·제출하는 것인지, 또는 하나의 정성평가자료 10페이지 이내에 2개 교량의 제안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개 교량을 통합하여 심의·평가하는 경우에는 교량별 현장여건, 구조계획 및 시공계획 등을 10페이지 이내에 제시하여야 하므로, 정성평가자료의 페이지 수 조정 가능 여부도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사 검토 및 답변내용]

○ **흑백 작성 범위에 대한 질의**

- 정성평가 제안서를 포함한 정량평가 등 각종 첨부서류는 모두 흑백으로 작성 및 제출

○ **사급·관급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

- 신기술·특허공법 적용분이 원도급사를 통한 사급(하도급) 방식으로 적용

○ **교통우회가교 사용기간에 따른 손율 적용기준 질의**

- 교통우회가교 특성상 변경 된 개정안으로 “2개년” 으로 적용

○ **전적금액 산정 시 적용단가 기준시점에 대한 질의**

- “26년 하반기 기준 단가”가 공시되지 않아서 “26년 상반기 기준 단가”를 기준으로 시중노임을 적용

○ **교통우회가교 여유고 및 계획고 적용에 대한 질의**

- 원당1교는 하천인 아닌 용수로로써 H.W.L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관리주체인 농어촌공사 협의 시 제시한 용수로 관리수위(2.2m)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관리수위(EL=7.560)이상만 확보 필요
- 현재 제시한 우회가교 계획에 대하여 검토 후 적용한 사항이나, 향후 설계 진행 시 민원 및 발주기관 협의 사항에 의해 변경될 수 있는 사항

○ **보도부 설계하중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

- 본 설계에 적용된 가교는 공사용가교가 아닌 교통우회의 가교로 현재 교량을 철거 후 신설 전까지 교량처럼 사용하는 가교로써 KL-510뿐만 아니라 보도교 하중도 고려되어야 하며 구조안전성 및 처짐도 검토 필요

○ **지반침하 수치해석자료 제출대한 질의**

- 지반침하 수치해석 및 첨부자료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단, 교통우회가교의 경우는 말뚝(기둥)의 안전성에 검토 필요

[설계사 검토 및 답변내용]

○ 안전시설물 등 특허 외 견적범위에 대한 질의

- 본 제안된 가설교량은 일반공사용 가설교량이 아닌 보도가 포함된 우회용 가교로써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시·종점 흠막이 및 난간을 상부에 포함되어 산출 필요

○ 교량별 평가방식 및 정성평가자료 작성범위에 대한 질의

- 본 설계에서 제안된 원당1교 및 원당교 교통우회가교는 유지관리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건이 아닌 1건으로 진행할 예정임. 따라서 10페이지 내에 2개의 내용을 작성

① 발주처 : 인천도시공사 도시개발처(유선 032-260-5742)

② 설계사 : (주)삼안(유선 02-6488-8410)

③ 질의사항은 8/3(월)까지 이메일(seajs@ih.co.kr)로 접수된 질의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답변 및 게시(8/6)예정이며, 홈페이지 게시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안사 귀책사유에 해당함

접수번호 #2

질 의 서

공 고 명 : 장제로 기능개선 및 확장공사 신기술 · 특허공법 (교통우회가교 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				
질의자	회 사 명		접수번호	2
	성명/직급		접수일시	
	연 락 처		설계사회신일	
[질의내용]				
○ <제안요청서 10p> 설계조건상 한계상태설계법을 적용여부 - 가설교량은 설계기준 상 한계상태설계법이 아닌 허용응력설계법을 적용하는데,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KDS 21 10 00(가시설물 설계 일반사항), KDS 21 45 00(가설교량 및 노면복공 설계기준)] ○ <제안요청서 11p> 견적조건상 2026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2026년 하반기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 적용여부 - 공고일 기준으로 2026년 하반기 단가가 공시되지 않은 실정으로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설계사 검토 및 답변내용]				
○ <제안요청서 10p> 설계조건상 한계상태설계법을 적용여부 - [KDS 21 10 00(가시설물 설계 일반사항), KDS 21 45 00(가설교량 및 노면복공 설계기준)] 등의 설계기준을 준용하여 허용응력설계법으로 검토 ○ <제안요청서 11p> 견적조건상 2026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2026년 하반기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 적용여부 - “26년 하반기 기준 단가”가 공시되지 않아서 “26년 상반기 기준 단가”를 기준으로 시중노임을 적용				
① 발주처 : 인천도시공사 도시개발처(유선 032-260-5742) ② 설계사 : (주)삼안(유선 02-6488-8410) ③ 질의사항은 8/3(월)까지 이메일(seajs@ih.co.kr)로 접수된 질의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답변 및 게시(8/6)예정이며, 홈페이지 게시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안사 귀책사유에 해당함				